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
2015.3.3. (화) 16:00

충청북도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4일

3. 제안 이유

- 2007년 12월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이 제정되어 청소년 문제 해결,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에이치(4-H) 활동이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민간영역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4. 주요내용

- 가. 4에이치(4-H)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(안 제4조)
- 나.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(안 제5조)
- 다. 주관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(안 제6조)
- 라.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 제출(안 제7조)
- 마.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을 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·검사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4에이지(4-H) 활동 지원 조례안'은 2007년 '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'이 제정되어 청소년 문제 해결,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4에이치(4-H) 활동이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민간영역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